

한솔테크닉스 협력회사 행동규범

I. 제정목적

한솔테크닉스(이하 “회사”)는 회사와 협력사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경영시스템 5가지 분야의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와 협력사는 본 규범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윤리적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I. 적용범위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회사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본 행동규범을 적용 받는 협력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또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II. 협력사 행동규범

본 행동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및 ILO(국제노동기구) 등 글로벌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합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i. 인권 경영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직간접 근로자는 물론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강제 노동 금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금지되며,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위한 위협, 폭력, 납치 등으로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고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용 계약서는 근로자의 모국어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서면 제공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고용 조건 등으로 근로자의 신분증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용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 노동 금지

아동 근로자 고용은 금지됩니다. 여기서의 "아동"은 15세 미만 및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 등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학생 근로자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준수

근로 시간은 현지 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예외이되,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차별, 괴롭힘 금지 /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6. 결사의 자유

협력사 근로자는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 집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ii. 안전 보건 경영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1. 산업 안전보건

협력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 전기, 화재, 추락 등에 노출된 다양한 안전보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안전 작업 절차 및 안전 환경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와 위험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임신부와 수유부의 경우 위험한 근무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여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

협력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여 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구축, 근로자 교육 등의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훈련은 최소한 매년 또는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중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 복구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유해인자 및 육체노동

협력사의 근로자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노출을 파악하여 통제해야 하며, 통제가 어려울 경우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안전

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된 육체노동의 위해 요소에 대한 근로자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5. 설비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6. 위생 시설

협력사는 청결한 화장실, 식수 시설,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기숙사 제공 시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iii. 환경 경영

협력사는 모든 비즈니스 부분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환경 허가

협력사는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허가의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보존

협력사는 오염 통제 장비 및 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천연자원(물, 화석 연료, 광물, 산물 등)은 생산, 유지 관리, 시설 프로세스,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유해 물질 및 고형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해야하며,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4. 대기 배출 관리

협력사는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오존 파괴 물질 및 제조 운영상 생성되는 연소부산물 등은 배출 이전에 반드시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규칙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대기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5. 물질 규제

협력사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수자원 규제

협력사는 물 사용 등을 기록, 감시함으로써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전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iv. 윤리 경영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2.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되며,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보공개

협력사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회계 자료 등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기록의 위조나 허위 표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지식재산권

협력사는 지식재산권은 존중하여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및 직원 내부 고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6.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또는 동등하고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의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및 코발트의 출처 및 관리망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 법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v. 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을 비롯하여 관련된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협력사의 경영진은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2.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3. 위험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위험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하여 법규 준수, 안전보건, 윤리 위험 등을 식별하는 프로세스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4. 개선 목표

협력사는 사회, 환경적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협력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본 규범에서 다루는 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감사 및 시정

협력사는 법규 및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시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7. 공급망 책임

협력사는 협력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하위업체 또한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준, RBA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합니다.

문서 변경 이력

Version.	내 용
1.0	2026년 01월 최초 제정